

‘장원(粧源) 인문학자 지원 사업’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이하 “재단”)에서 인문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자가 우수한 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돋는데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위원회 운영) ‘장원(粧源) 인문학자 지원 사업’에서 연구를 수행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책임자 1인, 위원 2~4인
 - 2) 연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재단” 위원회 운영약정서의 약정기간으로 한다.
 - 3) “재단”과 연구책임자의 협의 하에 위원을 확정한다.
 - 4) 위원의 변경이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재단”과 연구책임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위원회는 “재단”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구계획서 심사 및 최종 선정
 - 2) 선정자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 3) 선정자 제재 조치에 관한 심의 의결
 - 4)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획에 대한 자문
 - 5)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재단”이 청하는 업무

제4조 (지원 대상) 인문학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선정연도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개인 연구자로(당해년도 8월 학위 수여예정자 포함), 자신의 연구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연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한도) 지원한도는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월 300만원 기준으로 총 3년간 1억8백만원을 개인당 지급하며, 연구 중간 평가 기간인 2년 이 도래했을 경우,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심사) 본 사업의 심사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운영위원회 3~5인
- 2) “재단” 이사 과반 수 승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1) 1차 심사: 위원회 3인의 서류 평가
- 2) 2차 심사: 위원회 3인의 면접 평가
- 3) 3차 심사: “재단” 이사 최종 과반수 승인

제7조 (연구비 지원)

- 1) “재단”은 연구자,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
- 2) 연구비는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하며 연구비 정산 보고의 의무는 없다.

제8조 (지원과제의 관리) “재단” 사무국은 과제별로 지원대상자 및 기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 과제별로 현황표(“재단”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9조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이용)

- 1) 연구 활동 중에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상의 모든 권리 중 일신 전속적인 것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 2) 다만 연구자는 “재단”과 “재단”的 관련 회사(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기업집단 내 회사의 포함)에 대하여 연구 약정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을 기간 제한 없이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3) “재단”은 연구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구자를 대신하여 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 표시권, 초상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행사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행사를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
- 4) “재단”은 연구자에게 연구 결과의 대외적 공표를 위한 “재단”的 홍보물 제작 협조 및同一 홍보물의 “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 제작물 게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 5) “재단”은 본 연구 결과물 및 연구지원 사실을 “재단” 및 “재단”과 관련 회사(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내 회사)의 광고 및 홍보 등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6) “재단”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재단”的 후원사인 (주)아모레퍼시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연구자 의무 사항)

- 1) 연구자는 연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매년 별도 서식의 실적 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 3) 개인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 수주 단독 연구 1과제, 공동 연구 1과제(연구책임자 역할 불가), 출강은 최대 3과목 수행 가능하다.
- 4) 연구자는 “재단”이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5) 과정 중에 생긴 연구 결과물에는 ”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문표기〉“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영문표기〉“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AMOREPACIFIC Foundation.”

제11조 (규정 미준수 연구자 제재 조치)

- 1)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표절, 중복게재 등) 및 그 밖에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서식의 중도 포기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재 조치는 재단 사무국과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비 미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 3) 연구 도중 타기관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재단”에 알려야 하며, “재단”은 연구 지속 가능여부에 따라 연구비 삭감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 4) 신청 시 허위사실 및 부정확한 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발 취소 및 재단 사업의 지원이 3년간 불가하다.

제12조 (행정사항)

- 1) “재단”에서는 연구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해당 과정을 수료하고 최종 수료를 승인한 경우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 3) “재단”은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서, 인적사항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재단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